

<최종 선언문>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개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스스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이다.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생존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개인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및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1. 건강권 선언

하나, 서울시민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서울시민은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하나, 서울시민은 균형 잡힌 식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 서울시민은 언제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서울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권고안

현재 쪽방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할 뿐이다. 이러한 제도는 일방적인 시혜에 불과하므로 자활의지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하나, 쪽방주민은 불필요한 공권력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불심검문)

하나,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공화장실, 공동주방, 목욕 및 난방시설의 확보, 일조권 보장, 방음시설, 공공조명 등)

하나, 쪽방주민의 건강 및 영양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 쪽방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방문간호인력 및 요양보호사 확충, 심리상담 및 치료, 공공병원, 무료진료소, 이동차량 지원 마련 등)

하나, 의료재원을 확충해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문 축소, 고액진료비 지원 확대)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부양의무제 폐지, 소득 발생시에도 수급비 보장, 수급비 인상)

하나,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양적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쪽방공동체 내 여성, 장애인, 아동을 비롯한 구성원의 현황 파악 및 개별 지원 대책 마련, 근로기회 제공)

하나, 쪽방주민의 자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상호 재능 교환,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마련,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 공간 마련)

하나, 쪽방주민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도와야 한다.

(교육, 봉사, 여가, 문화 기회 지속적 제공)

이 모든 권고안을 서울시 및 중앙정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2013년 12월 14일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 일동